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3

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17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선정당사자)	A
피 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5. 11.
판 결 선 고	2017. 7. 6.

주 문

1. 피고가 2016. 11. 10.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2011. 9. 16.자 취득분 취득세 236,630원, 농어촌특별세 23,640원, 2013. 5. 31.자 취득분 취득세 71,830원, 농어촌특별세 6,250원, 2013. 8. 2.자 취득분 취득세 993,810원, 농어촌특별세 86,48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6. 11. 10.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3

별세 합계 1,439,29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97. 2. 10. 설립되어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800,000주 중 원고들의 소유주식 수는 2011. 9. 16. 이전에 548,932주(68.62%)였다가 2011. 9. 16. 558,932주(69.87%)로 변동되었고, 이후 2013. 5. 31. 562,156주(70.27%), 2013. 8. 2. 606,156주(75.77%), 2014. 12. 5. 610,156주(76.27%)로 각 변동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1. 10.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주식 소유비율이 2011. 9. 16. 1.25%(= 69.87% - 68.62%)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236,630원, 농어촌특별세 23,640원, 2013. 5. 31. 0.4%(= 70.27% - 69.87%)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71,830원, 농어촌특별세 6,250원, 2013. 8. 2. 5.5%(= 75.77% - 70.27%)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993,810원, 농어촌특별세 86,480원, 2014. 12. 5. 0.5%(= 76.27% - 75.77%)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19,030원, 농어촌특별세 1,62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3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취득한 것일 뿐이고, 과점주주인 원고들이 이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② 이 사건 각 처분은 납세자를 C 외 7로 특정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각 어느 정도의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점주주인 원고들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만,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상,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3

부과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서 이중과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위헌이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 · 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취득세가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라는 점 등에 비추어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일반적인 취득세 부과와 달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만 특별히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비상장법인의 모든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설립 시의 과점주주는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사실적 지배력을 가진 과점주주에게만 취득세를 부과토록 하여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범위를 필요한 정도 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가 발생하는 횟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법인이 최초로 납부한 취득세와는 별개의 새로운 과세사실에 대한 취득세 부과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이 추구하는 공평과세 부과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이상의 과잉된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법익의 균형성도 만족하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3

장도 이유 없다.

2) 2011. 9. 16.자, 2013. 5. 31.자 및 2013. 8. 2.자 각 취득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분

종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 7항은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2011. 1. 1.부터 시행되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것)으로 개정되면서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 규정이 삭제되었다. 이후 2014. 1. 1. 부터 시행되는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개정되면서 제7조 제5항에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고, 구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2153호, 2014. 1. 1.> 제5조는 '제7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점주주가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 또는 지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므로, 과점주주에 대하여 간주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때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구분·특정한 후 주주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1. 9. 16.자, 2013. 5. 31.자 및 2013. 8. 2.자 각 취득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분은 원고들이 각각 부담하여야 할 세액과 과세표준이 구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 일괄 납세고지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납세고지는 위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3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2014. 12. 5.자 각 취득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분

가) 갑 제1호증의 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4. 12. 5.자 취득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자로 'C 외 7(D, E, F, A, G, H, I)'로 기재하여 원고들을 모두 납세자로 기재하였으나 원고들이 각각 부담하여야 할 세액과 과세표준은 기재하지 않은 채 납세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납세자로 원고들 명의를 모두 기재한 이상 납세자 특정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 1.부터 시행되는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인 원고들은 간주취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관계없이 취득세 전액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4. 12. 5.자 취득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이 각각 내부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특정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2153호, 2014. 1. 1.> 제5조는 제7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점주주가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것은 2014. 1. 1. 이전이므로 위 부칙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4. 12. 5.자 취득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분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3

지할 때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구분·특정한 후 주주별로 각각 통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2153호, 2014. 1. 1.> 제5조가 '제7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점주주가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함께 살피건대,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비로소 2014. 1. 1.부터 과점주주가 되는 자만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2014. 1. 1. 이전에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2014. 1. 1. 이후 주식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과점주주인 원고들의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주식 소유비율이 2014. 1. 1. 이후로서 2014. 12. 5. 0.5% 증가한 이상, 원고들은 과점주주로서 그 증가분 부분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3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손호영

판사 박지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3

관 련 법 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同住宅의 경우를 제외한다)·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存續하는 分割合併의 相對方法人"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의 규정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6.12.30.>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연대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입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3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부칙 <법률 제12153호, 2014.1.1.>

제5조(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점주주가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3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해산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新會社)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3

선 정 자 목 록

1. A

2. C

3. D

4. F

5. G

6. I

7. H

8. E

끝.